

제3장 경기

제 1조 경기장의 유지

K리그 클럽(이하 클럽)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2조 경기장

- ① K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②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시즌 개막 7일 전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경기장은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한다.
 -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 3) 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 1.5m 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 5)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풀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6)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 ⑤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⑥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살수(撒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및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 2)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살수 횟수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3) 홈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바.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⑦ 경기장 관중석은 아래와 같다.
- 1) K리그 클래식 공식경기 : 좌석 수 10,000석 이상
 - 2) K리그 챌린지 공식경기 : 좌석 수 5,000석 이상
- ⑧ 모든 관객석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권고한다.

제 3조 경기장 부대시설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 ① 운영 본부실
- ② 양 팀 선수대기실
- ③ 심판대기실
- ④ 실내 워밍업 지역
- ⑤ 경기감독관석 및 **심판평가관석** ~~매치~~ 코디네이터석 <변경. 2018/01/15 개정>
- ⑥ 기록석
- ⑦ 의무실
- ⑧ 도핑검사실
- ⑨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⑩ 실내 기자회견장
- ⑪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⑫ 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 ⑬ VIP룸
- ⑭ 기자석(메인스탠드 중앙부로 경기장 전체가 관람 가능하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전원 및 노트북 등이 설치 가능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을 것)
- ⑮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 ⑯ TV중계 및 라디오 중계용 방송 부스
- ⑰ 전광판
- ⑱ 출전선수명단 게시판
- ⑲ 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 ⑳ 입장권 판매소

- ㉑ 종합 안내소
- ㉒ 관중을 위한 응급실
- ㉓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㉔ TV카메라 설치 공간
- ㉕ TV중계차 주차장 공간
- ㉖ 케이블 시설 공간
- ㉗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㉘ 경기감독관 대기실 <추가. 2018/01/15 개정>

제 4조 조명장치

- ①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2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5조 벤치

- ①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홈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원칙적으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전 승인 시, 우측에 홈팀 벤치의 설치가 가능하다. <변경. 2018/01/15 개정>
- ③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3) 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 6조 의료시설

홈경기를 실시하는 클럽(이하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특수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 7조 원정 클럽을 위한 관객석 확보

- ①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개최 일주일 전까지 원정 클럽이 요청한 적정 수의 좌석을 원정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제 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 ①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 항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소개 <변경. 2018/01/15 개정>
 - 2) 대회방식 및 경기방식
 - 3) 선수 및 심판 교체
 -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 5) 추가시간
 - 6) 다른 공식경기의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
 - 7) 관중 수(후반전 15~30분,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 8) 상기 항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9)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 10)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11) 경기 중, **VAR상황 시, VAR 영상판독 문구 전광판 표출** <추가. 2018/01/15 개정>
- ② 홈 클럽은 시합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 음악방송
 -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 상기 항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 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 ① 홈 클럽은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 경기개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경기장 시설 현황
 - 2) 홈경기 안전계획서
- ② 연맹은 법령 및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의해 시즌 개막 15일 전까지 각 클럽의 홈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공식 경기 개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③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공식경기 개최를 불허하며, 제 10조에 의한다.

제 10조 경기장 점검

- ①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 ②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1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0조 2항에 따른다.
- ④ 앞 3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제 32조 1항에 따른다.

제 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①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조 공식경기

- ① K리그에서 공식경기란 다음의 경기를 말한다.
 - 1) K리그 클래식
 - 2) K리그 챌린지
 - 3) 리그컵
 - 4) 플레이오프(챌린지PO, 승강PO)

- 5) 상기 항 이외 이사회가 지정한 경기
- ② 클럽은 상기 ①항 홈경기의 과반 이상을 홈 경기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된다.

제 13조 참가 의무 등

- ① 클럽은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공식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소속 선수가 대표팀 또는 선발팀 등의 일원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의무가 있다.

제 14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연고지역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경기 개최가 복수 횟수에 이르는 경우에도 그 경우 마다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4~6호에 해당하는 경기는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 ④ 슈퍼컵 개최지는 K리그 클래식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 16조 출전 자격

- ① 연맹 규정 제 2장 선수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② 제 2장 제 5조에 의거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 및 팀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③ 제재 중인 지도자(이하 코칭스태프)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선수대기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그라운드에서 사전 훈련 및 경기 중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본 항 1호를 위반한 코칭스태프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④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추가. 2018/01/15 개정>

제 1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의 수는 최대 8명(주치의, 통역 제외)까지로 한다.
-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수 교체는 대회 요강에 따른다. 예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승인 후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변경. 2018/01/15 개정>
- ④ 출전선수명단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18조 유니폼

- ① 모든 공식경기에서는 마케팅 규정상의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상기 1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 (1~99번에 한함)와 일치한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③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 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 ④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 연맹(경기감독관) 및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하며,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클럽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동절기 방한용 내피 상의 또는 하의(타이즈)를 착용하고자 할 때는 유니폼(상·하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⑥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기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출전이 불가하다.~~ <변경. 2018/01/15 개정>

제 19조 사용구

공식경기 사용구는 연맹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 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 ①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②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상기 3,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항 및 바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⑦ **VAR 운영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회요강에 따른다.** <추가. 2018/01/15 개정>

제 21조 공식경기 개최기간

제2장 제12조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실시한다. 단, 해당 일정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제 22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각 클럽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제 23조 경기일정 준수

클럽은 제22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①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구단의 합의 후 연맹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연맹이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연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에서 부담한다.
- ② 공식경기의 일시의 변경 신청은 해당경기 개최 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맹은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당 경기 10일전까지 해당 클럽에 통보한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 ③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항,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제 25조 경기시간 준수

- ①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클럽에 제재금(1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클럽이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단, 1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제재금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
- ③ **경기에 참가하는 팀(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1)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4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경기감독관에게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연맹으로 통보한다.

- 2) 경기시간이 변경될 경우, 홈 클럽은 전광판 및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 변경된 경기시간과 변경사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3)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4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4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29조 1항에 의한다.
- 4) 경기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있으며 31조에 따른다.
- 5) 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연맹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재제를 부과할 수 있다.

<추가. 2018/01/15 개정>

제 26조 동일개최 제한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2경기 이상 개최할 수 없다.

제 27조 혼합개최 금지

공식경기는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및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 할 수 없다.

제 28조 경기위원회경기감독관

- ① 연맹은 공식경기 및 대회의 운영과 리그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경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 경기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경기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다.
- ③ 경기위원의 자격은 정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프로경기 100경기 이상 출전한 자
- 2) 프로감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었던 자
- 3)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④ 경기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식경기 및 대회의 경기감독 및 경기감독관 운용
 - 2) 리그발전을 위한 규정, 제도개선
 - 3) 기타 연맹에서 부여하는 업무 <변경. 2018/01/15 개정>
- ⑤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⑥ 경기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고 없이 4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경기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악천후나 경기개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 하여야 한다.
 -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포함)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경기개시 90분전, 홈 클럽 및 원정 클럽의 출전선수명단을 확인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5) 사전에 결정된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 클럽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하되, 그래도 색상 식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홈 클럽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클럽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클럽 선수대기실과 심판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8)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K리그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9) 상별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0) 상기 1~9호 이외에 총재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⑧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월~8월) 기간 중, 대회 대회요강에 따라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추가. 2018/01/15 개정>

제 29조 경기중지 결정

-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재경기

-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 ②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등 점검미비에 따른 홈 클럽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경기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이 24시간내에 홈경기로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 연맹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원정클럽이 홈경기로 개최하지 않을 경우, 상대 클럽(기존 홈 클럽)의 홈경기로 개최된다.
- ③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2)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제 31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의 보상

- ①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앞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①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③ 앞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④ 앞 2항의 무자격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 3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①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클럽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제34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 35조 대회요강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 36조 인터뷰 실시

- ① 홈 클럽은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식기자회견 이전에 그라운드에서도 플래시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재 중인 지도자(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포함)도 경기종료 후 실시되는 공식기자회견 및 플래시인터뷰에는 참석해야 한다.
- ②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클럽 감독으로 한다.
- ④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⑥ 경기 후 미디어 부재로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홈팀 홍보담당자는 양 클럽 감독의 코멘트를 경기 종료 1시간 이내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제 37조 통산기록

- ① 승부차기 승
 -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리 클럽의 승점은 해당 연도 대회요강에 따르며, 시즌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클럽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 ② 기권승, 몰수승, 순연경기 승리는 기록에 포함시킨다.
- ③ 추첨 승
 - 추첨 승은 앞 1항의 승부차기 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개인 기록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개인 연속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대표팀 소집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 2) 통산 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슈퍼컵, 올스타전, K리그 지정 경기의 기록은 배제된다.

제 38조 ~~친선경기 등 흥행성 경기의 개최~~

- ① 클럽이 비공식경기를 흥행성 경기(유료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수입발생)로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 (30일) 전까지 다음의 각 호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 1) 승인신청 공문 및 신청서(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2) 신청자 이행각서(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3) 대회규정(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4) 연맹 및 KFA의 기타 요구서류(시설물 사용동의 공문, 대회 협약서, 참가 클럽 확정

공문 등)

- ~~② 앞 1항의 경기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변경. 2018/01/15 개정>~~
- ② 외국클럽과의 경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클럽이 외국 클럽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장소가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 클럽과 흥행성 대회는 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2개월(60일)전까지, 흥행성 경기는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까지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의 참가를 위한 승인 신청은 대회 개막 1개월(30일)전까지 연맹 및 협회에 국제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경기의 참가를 위한 승인 신청은 경기일 14일전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외국 클럽과의 비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도 경기(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항의 경기(대회)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 ③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는 사전에 소속 클럽의 승인 없이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④ 은퇴경기는 한국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 (K리그에서 활약하고 K리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선수의 전 소속클럽 또는 현 소속클럽이 신청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개최한다.
- ⑤ 연맹과 클럽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공식경기(연맹이 승인한 경기 포함)의 전에 개최되는 오픈경기나 축구클리닉, 사전 그라운드 내에서의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변경. 조항 통합. 2018/01/15 개정>

제 39조 외국 클럽과의 경기

- ~~① 클럽이 외국 클럽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장소가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 클럽과 흥행성 대회는 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전까지, 흥행성 경기는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까지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외국 클럽과의 비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도 경기(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상기 2항, 3항의 경기(대회)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제 40조 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는 사전에 소속 클럽의 승인 없이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 41조 구제경기~~

~~구제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유망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 한다.~~

~~제 42조 은퇴경기~~

~~은퇴경기는 한국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K리그에서 활약하고 K리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제 43조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의 개최수속~~

- ~~①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클럽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 44조 자선경기~~

- ~~① 연맹 및 클럽은 이재민(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앞 1항은 제4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조 오픈경기~~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경기의 오픈경기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